

# 「청년 지역사회 어울림 플러스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의성군과 (재)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직무능력 향상과 인건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유입·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방지와 지역 경제 활력 추진을 위하여 「청년 지역사회 어울림 플러스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할 의성군 내 기업은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3. 3. 15.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## 1. 공고 개요

- 공고기간: '23. 3. 15.(수) ~ '23. 3. 28.(화)
- 신청접수: '23. 3. 15.(수) ~ '23. 3. 28.(화) 18:00까지
- 공모대상: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기업(단체)이면서, 청년을 신규 채용 및 채용할 계획인 기업
- 지원내용
  - 인건비: 참여기업(청년)에 직접 지원(월 187.5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약정임금 중 기업부담은 최소 10% 이상\*, 4대 보험료는 기업 부담)
    - \*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(지원금 부족분 기업부담으로 보전,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 특성, 기존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결정) 보장
    - ※ 공고문 4번 참여기업의 의무 필수 참조
  - 주거비: 참여청년 1인당 월 40만원 지원
    - ※ 단, 기존 의성군 거주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지역에서 의성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지원
    - 예시) 영천시 → 의성군
  - 기타: 직원 역량강화 교육·컨설팅, 네트워킹, 모니터링 지원
- 지원기간: 2023. 3. ~ 2023. 12.(10개월)
- 지원규모: 청년근로자 4명
  -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

## 2. 자격요건

- 기업: 사업장 소재지가 의성군인 기업(단체)
  - 만 39세 이하 청년을 '23. 3. 1.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 또는 참여 기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청년을 채용한 기업
  - ※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구축사업 참여기업 선정우대
  - ※ 청년기업우대: 대표자의 연령이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(단체)
  - ※ 정규직 전환(고용승계)을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기업 선정우대
- 청년 근로자: 만 39세 이하(1984. 1. 1. 이후 출생자)인 청년,  
사업기간 동안 의성군 주민등록 유지가 가능한 청년
  - ※ 단, 타 지역 거주자는 반드시 채용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전입

### 3-1. 제외 대상(기업)

- 1) 사업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
- 2)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기업
- 3)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\*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\*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
- 4)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'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기업
  - ※ 타 유형(기존·신규사업 1유형, 기존·신규사업 2유형) 중복 참여 불가
- 5)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
- 6)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- 7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8) 임금체불 사업장,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
- 9)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### 3-2. 제외 대상(청년)

- 1) 만39세 초과인 자
- 2) 『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』 관련 직접  
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 참여\*자
  - \* 중복참여 : 동일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
  - 반복참여 : 최근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 또는 다른기관에서  
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등

- 3) 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, 대표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
- 4)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
- 5) 외국인
- 6)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중인 청년 및 1년 이내 참여기업에 재입사한 경우
- 7)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 이전 및 유지가 불가능한 청년

《 제외대상 근무형태 》

- 전화·방문고객 단순 상담
-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
-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
-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
-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경우

#### 4. 참여기업의 의무

- 참여기업 선정 이후, 채용기일 이내 청년근로자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(차순위 후보 기업을 지원)
-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,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
- 청년임금은 사업기간 동안 기본급 최저임금(월 2,010,580원)(세전, 식대 및 유류비 등 각종 실비 보상적 수당 제외)이상으로 책정
- 인건비의 10%이상 및 각종 제세 및 4대 보험료는 기업이 자부담
- 청년 근로자 4대 보험 가입
-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, 운영기관 및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
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함
- **본 사업 내용을 청년 근로자에게 안내**
-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기업은 해당 청년에 대하여 1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과 6시간 이상의 심화교육을 보장하여야 함
  - ※ 교육은 운영기관에서 추진 → 기업은 교육 진행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
  - ※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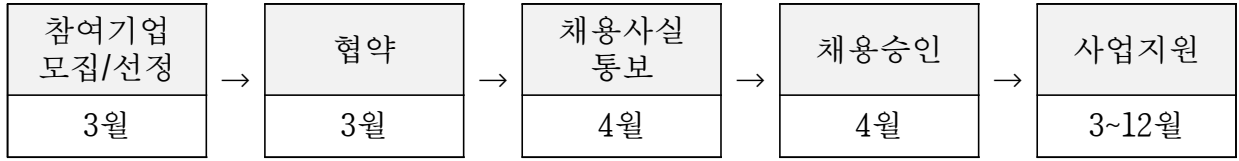
## 5. 제출서류

- 사업 참여 신청서(붙임 1) 1부
- 청년활용계획서(붙임 2) 1부
- 기업확인서(붙임 3) 1부
- 기업대표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붙임 4) 1부
-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(붙임 5) 1부
- 중복지원금지 협약서(붙임 6)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)
- 2022년도 매출액 증빙자료(재무제표, 부가세 표준증명원 택1 제출) 1부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(전체) 1부
- 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
- 기업대표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(해당시) 우대 증빙서류('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구축사업 참여기업) 1부
  - ※ 법인등기부등본, 부가세 표준증명원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완납증명서, 기업대표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( '23. 3. 15. 이후) 발급분만 인정
  - ※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전체 1개 파일로 병합하여 PDF 파일로 제출
  - 첨부파일제목: '기업명' 으로 제출

## 6. 선정방법

- 심의위원회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심사항목
  - 정량: 참여기업 매출액, 고용보험 가입자 수, 업력, 참여청년의 주소 이전 및 정규직 채용여부 등
  - 정성: 기업성장 및 직무적합성, 직원 능력개발·비전 제시
  - ★선정우대('22년 행안부 청년마을 구축사업 참여기업, 청년기업, 정규직 채용 협약기업)
- 선정된 참여기업이 포기 및 취소할 경우 차 등위 순으로 결정

## 7. 추진절차(2023년)



※ 선정 결과 개별 통보, 시기는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## 8. 신청/접수 및 문의처

- 온라인 신청 : [luy0726@gbtp.or.kr](mailto:luy0726@gbtp.or.kr) 이메일 신청
  - ※ 신청시 메일 제목 첫머리에 ‘[의성]’ 필히 기재
  - ※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 불가 / 이메일 신청 후 반드시 접수 확인
  - ※ 접수 시간 이후 자동 접수 마감
- 문의처 : (재)경북테크노파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
  - 전화 : 053)819-3074

## 9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
- 참여 청년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주일 이내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(사직서 및 건강보험자격상실 확인서 제출)
- 참여청년 퇴사 시 1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, 1개월 이내 미채용 시에는 선정(지원)을 취소할 수 있음
- 대체채용은 사업 참여기간 중 총 2회에 한함
-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지원 중단.
- 만근이 아닐 경우, 근무일수 기준 일할 계산 후 지원금 지급
  - ※ 지원금 × 실 근무일수 ÷ 월 총 근무일수(유급휴일 포함)
- 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
  - ※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
-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등 부정수급 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, 사업 참여 제한,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제재 조치